

茶山의 명판결과 조선의 법 풍속(15)

茶山의 도둑론



▶▶ 조선시대 안변 지도와 노인령



글. 김호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kimho@ginue.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가톨릭대학
교 교양교육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조선의
명의들', '조선과학인물
열전' 등이 있다.

산이 황해도 곡산에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김대득이라는 도둑이 사람을 죽이고 소를 빼앗은 사건이 있었는데 달포가 지나서야 겨우 알려져 조사를 하였다. 이 때 모두가 “이미 도둑이 멀리 달아났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다산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기색과 기필코 처벌하겠다는 신념으로 7일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황해도 곡산의 김대득 사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797년 8월 13일 곡산 관아에 출근한 다산은 곡산 이화동의 존위(尊位) 홍치범의 고발소장을 받아들었다. 이 마을의 주민 절충장군 김오선이 지난 7월 말 함경도에서 소를 사 가지고 돌아오던 중 도둑에게 소를 뺏기고 목숨마저 잊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변의 노인령 일대는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여 이미 산적들의 소굴로 유명하던 터였

다. 아무도 도둑에 대해 진술하지 않자 다산은 김오선이 죽던 날 현장에서 이를 목격했던 이봉위에게 비단을 주고 설득하여 도둑이 머문 장소를 알아낸 후 드디어 군교와 군졸들을 보내 8월 28일 강도 김대득을 체포하였다.

당시 다산을 도운 이봉위는 안변 법곳장에 가서 미역을 사다 파는 상인이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1796년 겨울 이봉위는 미역을 사기로 하고 법곳장에 갔는데 테리고 간 소가 너무 작아 많은 짐을 싣기 어려웠다. 이 때 가게 앞에 있던 김 씨라는 자가 짐 싣는 것을 도와주어 감사하게 여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 1797년 여름, 장사를 위해 곡산을 지나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면서 이봉위 일행에게 칼을 들어대며 “소리치면 당장 너희들을 썰러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칼에 핏자국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이미 누군가 당한 것이 분명했으니 소를 사서 귀가하던 김오선이었다. 당시 이봉위를 협박한 도적은 지난 겨울 짐 싣는 것을 도와준 김 씨였던 것이다. 강도는 김오선을 살해하고 소를 강탈한 것이 이봉위 일행에게 발각되자 급히 빼앗은 소를 끌고 가려다가 길의 움푹 파인 곳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봉위는 이 틈을 타서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봉위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 김 씨의 용모는



얼굴이 희고 광대뼈가 솟았으며 코는 높고 눈썹이 시커멓고 키는 중간쯤으로 20대 중후반이었다.

진술을 받아 적은 다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수사장교 김광윤 등에 쥐어주고 안변의 법곳장으로 파견하여 탐문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사장교 김광윤 등은 법곳장에서 탐문하던 중 이팡인이라는 양반댁에서 일하는 머슴 김대득이 지난 여름 마을에서 이유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김대득을 추적하기로 했다. 그리고 8월 28일 드디어 안변의 노인령 아래 세동마을의 한 초가 앞에서 김대득을 체포하였다. 이곳은 법곳장에서 80리나 떨어진 산골 중의 산골이었다.

다산의 도둑론

다산은 사건을 처리한 후 보고서 말미에 ‘김대득의 범행이 너무도 분명하여 재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으며 또한 이러한 강도를 단지 목숨으로 보상하고 말 일은 아닐 듯하다.’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다산은 ‘잘 생각해보면 살인사건은 매우 큰 일이고, 사람의 목숨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의 검험에서 초점에 의문이 없다손치더라도 반드시 재검을 하는 법이다. 특히 이번 사건 역시 검험 대신 신문을 위주로 하였고, 처음 조사에서 명백히 사건의 정황이 밝혀졌지만 다시 관원을 차출하여 재조사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 황해감영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일 후에 감영의 관찰사는 조사를 명령하는 대신 김대득을 곤장으로 때려죽이고 말았다. 다산은 아무리 강도 살인의 흉악한 범인이라고 해도 절차를 밟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정에 치우친 황해감사의 처리를 안타까워했다.

후일 다산은 ‘목민심서’를 저술하여 도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위에서 위엄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둘째, 중간에서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고 해도 근절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먼저 윗사람이 위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산은 사신(使臣)이나 수령들이 탐욕과 불법을 자행하여 신뢰를

잃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또를 ‘일산(日傘) 아래 큰 도둑’이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이다. “윗사람이 이미 바르지 못하니 그림자가 어떻게 곧을 수 있겠는가? 도둑들조차도 몰래 수군거리면서 지위가 저렇게 높고 기대 받는 바가 저렇게 무거우며 나라의 은혜를 저렇게 받으면서도 오히려 도둑질을 하는데, 우리같은 소인들이야 아침에 저녁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한다. 도둑들이 모여 보통하는 말이 이러하니 어떻게 그들을 금할 수 있겠는가.” 다산은 관료들이 청렴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상민들의 도둑질을 나무라도 그만두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갈의거사 이야기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법이라고 설화한 다산은 갈의거사 이야기를 인용하여 진짜 도둑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였다. 갈의거사는 호남지방의 호걸이었다. 일찍이 그가 전남 부안의 쌍교 장터를 지나다가 군관이 도둑을 잡아 붉은 포승으로 결박하고 종이고깔을 씌우고 손을 뒤로 묶어 채포하는 것을 보았다. 갈의거사는 느닷없이 앞으로 나서서 도둑의 팔을 잡고는 목을 놓아 통곡,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한편 위로하고 한편 넋두리하기를 ‘원통하다 그대여! 어찌하다 욕을 당하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니, 온 장터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겹겹이 둘러서서 구경하는 것이었다.

군관이 깜짝 놀라 포졸에게 명하여 갈의거사도 함께 결박하도록 하니, 갈의거사가 말하기를 ‘자네가 나를 결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 도둑과 한편이라고 해서 인가? 또한 내 말을 들어보고 나서 결박하든지 놓아주든지 하라.’고 했다. 군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거사는 “지금 온갖 도둑이 땅 위에 가득하다. 토지에서는 그 재결(災結)을 도둑질하고, 호구(戶口)에서는 그 부세를 도둑질하고, 기민 구제에서는 그 양곡을 도둑질하고, 환곡에서는 그 이익을 도둑질하고, 송사에서는 그 뇌물을 도둑질하고, 도둑에게서는 그 장물을 도둑질한다. 그런데도 관찰사와 사또들은 도둑질하는 자들과 한때거리가 되어 숨겨주고 들추어내지 않는다. 지위가 높을수록 도둑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녹봉이 후할수록 도둑질의 욕심은 더욱 커진다. 그러고서도 행차할 적엔 깃발을 세우고 머무를 적에는 장막을 드리우며 푸른 도포에 붉은 띠 장식도 선명하여 종신토록 향락하여도 누가 감히 무어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유독 이 깊고 또 깊은 끝에 좀도둑질한 사람이 이런 큰 욕을 당하게 되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내가 이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지 다른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다.”하니 이에 군관은 “그대의 말씀이 옳다.”면서 술을 대접하고 놓아 보냈다는 것이다.

토포군관이 ‘진짜 도둑’

중간에서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릇 지방의 토포군관(조선후기 각 진영과 병영 소속 무관들로 도적을 수사·체포하는 임무를 맡음)들이 실제 도둑의 두목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다산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진짜 도둑(군관)’을 질타했다.

사실 군관을 중간에 끼지 않으면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잣집과 형세 있는 집의 의복과 기물을 도둑이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팔 길이 없으니 그것을 파는 것은 군관이다. 대개 장물값이 10냥이라면 도둑이 3냥을 먹고 군관이 7냥을 먹는 것이니 관례가 본래 그러하다. 새 도둑이 처음으로 패거리에 들어가면 으레 군관에게 신고식을 한 후 세 번 그 장물을 바치고 나서야 자기 뜻을 꾀할 수가 있는데, 한번이라도 혼자 차지했다가는 바로 관청으로 잡혀오게 된다. 또 군관들은 도둑을 사주하여 널리 부자백성들을 불게 하여 도둑 패거리로 연루시키거나 혹은 장물을 매입했다고 협박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살을 다 빨아먹고 나서야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또 이들은 감옥의 구원자가 되어 밧줄을 주고 사다리를 놓아주어 도둑의 탈출을 돋기도 한다. 이처럼 진영·병영의 군관이란 자들이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의 두령과 같다.

이에 수령은 마땅히 이런 사정을 알아서 민간에서 도둑 맞았다고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토포군관들을 은밀히 타일러 물건을 찾아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관에게 “도둑의 정황은 관에서 환히 다 알고 있는 바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도둑이 어디에 있겠느냐. 네가 물건을 찾아서 돌려주지 않으면 네게 곤장을 칠 것이다. 그래도 뉘우

치지 않는다면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도둑을 찾고야 말겠다는 기색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신념을 보이면 열흘을 넘기고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기색을 보이고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하면 군관은 여러 도둑들에게 알릴 것이요, 여러 도둑들은 자연 도망치고 흩어져서 수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다시는 도둑맞았다고 고발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다산은 도둑을 잡아들이는 토포군관들이야말로 도둑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간 부패의 고리라고 보았다. 이들을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도둑은 절대 근절될 수 없다고 보았다.

범인 은닉을 엄하게 처벌하라!

마지막으로 하층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이다. 무릇 도둑의 와주(窩主·범인을 숨겨주고 이익을 챙기는 자)는 모두 읍내 주막 등에 살고 있다. 따라서 첨첩산중의 촌구석은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없다. 여객이나 주막에는 하루에도 1천 사람이나 겪게 되니 비록 낯선 나그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용하고 궁벽한 곳에서는 한 사람의 나그네가 투숙을 해도 곧 이웃에서 그 신분을 캐물어 종적이 곧바로 탄로 나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그러므로 무릇 종적을 감추려는 사람들은 모두 주막 등에 숨어 있는데 십리나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각자 포진하여 모의할 일이 있으면 서로 호응하고 급박한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 주니, 장물의 은닉과 처자식을 서로 기억하는 데가 모두 이러한 곳들이다.

따라서 수령이 도둑을 종식시키려면 마땅히 엄밀히 규찰하여 도둑을 은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거듭 명령을 내려 도둑을 숨겼다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타일러야 한다. 단 한번을 범했을지라도 반드시 법률로 처단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도둑이 소굴을 삼을 테가 없게 될 것이다. ‘대명률’에 ‘와주로서 장물을 나눈 자는 베고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차등을 두어 처벌한다.’하였으니 사또들이 마땅히 참고해야 한다. 다산은 범인을 은닉하면 사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강도살인이나 도둑질을 한 후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